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69호 2023. 3. 30.(목)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530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3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37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13
고성군 고시 제2023-39호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고성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고성군 고시 제2023-4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8
고성군 고시 제2023-4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3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23-485호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6
--	----

회 람									
--------	--	--	--	--	--	--	--	--	--

고성군 공고 제2023-530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0.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속에서 군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대외협력관의 임무(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대외협력관의 위촉 및 품위유지(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대외협력관의 임기 및 위촉해제(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보상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055)670-2052, 팩스번호: (055) 670-205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전화 055-670-2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발전을 위해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지원한다.

-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 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수·축산,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요청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3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2조)
- 나.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방접종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보건행정과
- 2) 전화: (055)670-4089, 팩스: (055)670-401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담당(전화 055-670-4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있음()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 수집·이용 항목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수급자 여부
 - 이용 및 보유기간
 -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3-37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2.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영오면 양산리 94-1외 1필지	영오면 양산4길 49-15	2023.03.2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양산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2	고성읍 신월리 산78-1	고성읍 신월로 3-36	2023.03.2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3	하일면 동화리 산81-57	하일면 동화3길 182-9	2023.03.2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일면 동화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4	삼산면 두포리 883	삼산면 두포2길 77-13	2023.03.2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5	대가면 금산리 127-1	대가면 금산6길 61	2023.03.2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금산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영오면	양산4길 49-15	2023.03.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대가면	금산6길 65	2023.03.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3	고성읍	신월로 3-66	2023.03.2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3 - 39호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고성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16-218호(2016. 12. 30.)로 최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의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고성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3. 23.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고성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고성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조서

1.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고성하수처리장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99,513	감) 2,352	97,161	경상남도 고시 제1993-127호 (1993.11.25.)	

2.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성하수처리장	○ 구역축소 - 면적: (당초) 99,513m ² → (변경) 97,161m ² (감 2,352m ²)	○ 군계획시설(고성하수처리장) 내 장래 확장 및 사용계획이 없는 부지 활용을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3 - 4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3-130호(2023. 3. 23.)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3. 23.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실음 생략(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67,231,155.1	-	667,231,155.1			
도시 지역	계	23,350,496.6	-	23,350,496.6		
	소 계	2,788,347.0	-	2,788,347.0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3,763.0	-	1,763,763.0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371.0	-	878,371.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146,213.0	-	146,213.0	
	소 계	184,289.0	-	184,289.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184,289.0	-	184,289.0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 계	6,297,846.3	-	6,297,846.3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6,266,493.3	-	6,266,493.3	해면 1,547,743㎡
		준공업지역	31,353.0	-	31,353.0	
	소 계	13,111,554.3	-	13,111,554.3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455,000.0	-	455,000.0	
		생산녹지지역	4,611,079.0	-	4,611,079.0	
		자연녹지지역	8,045,475.3	-	8,045,475.3	해면 1,135,705㎡
	미 지 정	968,460.0	-	968,460.0	해면	
	계	643,880,658.5	-	643,880,658.5		
도시 지역 외	소 계	145,885,874.6	증) 4,585	145,890,459.6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42,672,828.7	-	42,672,828.7	
		생산관리지역	28,056,201.9	-	28,056,201.9	
		계획관리지역	75,155,680.0	증) 4,585	75,160,265.0	해면 936,470㎡
		관 리 지 역	1,164.0	-	1,164.0	
	농 립 지 역	303,258,202.5	-	303,258,202.5		
	자연환경보전지역	49,319,159.0	감) 4,585	49,314,574.0		
	미 지 정(해면부)	145,417,422.4	-	145,417,422.4	해면	

※ 기정) 경상남도 고시 제2022-544호(2022. 11. 3.)로 고시된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2-190호에 따른 고시에 따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4,585	-	4,585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4,585	4,585	100.0	
자연환경 보전지역	4,585	감) 4,585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지역	4,585	100%이하	· 삼봉광산 폐광의 갱내수로 인한 병산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64,768,714 [140,149,437]	감) 4,585 [-]	164,764,129 [140,149,437]	[]안은 해면부
	한산만 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일원	83,474,430 [69,985,000]	감) 4,585 [-]	83,469,845 [69,985,000]	
	남해· 통영Ⅱ 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일원	28,203,847 [17,074,000]	-	28,203,847 [17,074,000]	
	진동만 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일원	53,090,437 [53,090,437]	-	53,090,437 [53,090,437]	

※ 기정)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4호(2021. 5. 6.)로 고시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 및 용정리 1294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1-127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나. 행정구역별 면적 결정(변경)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9,972,349	계	164,768,714	감) 4,585	164,764,129	
				육역	24,619,277	감) 4,585	24,614,692	
				해역	140,149,437		140,149,437	
경상 남도	고성군	고성읍	44,119,732	계	45,667,000		45,667,000	한산만 구역
				육역	-		-	
				해역	45,667,000		45,667,000	
경상 남도	고성군	삼산면	34,896,393	계	37,807,430	감) 4,585	37,802,845	한산만 구역
				육역	13,489,430	감) 4,585	13,484,845	
				해역	24,318,000		24,318,000	
경상 남도	고성군	하일면	30,985,506	계	28,203,847		28,203,847	남해· 통영 II 구역
				육역	11,129,847		11,129,847	
				해역	17,074,000		17,074,000	
경상 남도	고성군	동해면	53,401,541	계	17,665,437		17,665,437	진동만 구역
				육역	-		-	
				해역	17,665,437		17,665,437	
경상 남도	고성군	거류면	36,569,177	계	35,425,000		35,425,000	진동만 구역
				육역	-		-	
				해역	35,425,000		35,425,000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일원 (한산만구역)	· 변경 -면적: 83,474,430㎡ → 83,469,845㎡ (감 4,585㎡)	· 삼봉광산 폐광의 갭내수로 인한 병산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③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삼봉광산 수질정화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삼산면 병산리 117-4 일원	-	증) 4,585	4,585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삼봉광산 수질정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 위치: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 일원 · 면적: 4,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봉광산 폐광의 갭내수로 인한 병산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시설 신설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3-4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9.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하일면 송천리 831-3	하일면 송천4길 44	2023.03.28.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일면 송천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2	구만면 화림리 산236	구만면 화림3길 565-22	2023.03.28.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 화림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3	동해면 봉암리 905-4	동해면 봉암2길 107	2023.03.28.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봉암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고성군 제2023 - 485호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3.

고 성 군 수

- 다 음 -

- 공고기간: 2023. 3. 21. ~ 4. 6.(14일 이상)
- 공고내용: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근거: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처분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대상 농지 현황						청문대상(농지소유)자		청문 사유	반송 사유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고성	고성	서외	38-22	답	1,43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32-*	정양*	휴경	폐문부재
고성	고성	서외	38-22	답	1,43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32-*	윤중*	휴경	폐문부재
고성	개천	명성	207	전	354.6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80, 10*호(고현동, 동문아파트)	김나*	휴경	폐문부재
고성	개천	명성	207	전	354.8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60번길 19-6, 20*호	박장*	휴경	폐문부재
고성	대가	암전	38	답	88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1008동 2402호(동,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	제숙*	휴경	폐문부재
고성	대가	암전	44	답	932			휴경	폐문부재
고성	동해	외산	188-1	전	1067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41번나길 2*	이정*	불법전용	폐문부재
고성	삼산	두포	251-2	답	20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110, 52동 130*호(연산동, 한양아파트)	박영*	휴경	폐문부재
고성	삼산	미룡	463-2	답	86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3통 1반 일성르네상스 101동 60*호	김권*	휴경	폐문부재

대상 농지 현황						청문대상(농지소유)자		청문 사유	반송 사유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고성	삼산	미룡	560-2	답	468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3동 1반 일성르네상스 101동 60*호	김권*	휴경	폐문부재
고성	영현	영부	526	답	1,825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89, 102동 50*호	하봉*	휴경	폐문부재
고성	영현	추계	218-2	전	1,216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6길 24	강형*	휴경	폐문부재
고성	영현	영부	218-2	전	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56-*	농업회사법인 발*	휴경	폐문부재
고성	상리	자은	143-4	전	2810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로129-7*	김정*	휴경	폐문부재
고성	영오	영대	1104-3	답	9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113, 1101동40*호(망포동, 영통 마젤란21)	정창*	휴경	폐문부재
고성	회화	당항	438	전	91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 32.B동 130*호(우동,트럼프 월드센텀2)	정일*	휴경	폐문부재
고성	회화	삼덕	1408-8	답	53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127.101동20*호 (삼선천년빌)	홍중*	휴경	폐문부재
고성	회화	봉동	648	답	3269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9, 204동230*호 (일성유수안2차)	강범*	휴경	폐문부재

○ 청 문

- 일 시: 2023. 4. 7.(금) 10:00 ~ 12:00
- 장 소: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 참 석 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선임허가서, 신분증 지참)
- 청문주재자: 지방농업주사 최미경
- 사 유: 농업경영 불이행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 확정을 위한 의견청취

○ 기타사항

- 청문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불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농지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 문의처: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13)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대상농지 결정 (문서번호 및 일자 :)
2. 당사자	성명(명칭)	(직업 :)
	주 소	
3. 의 견		○ 대상농지 :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휴대폰 :)

성명 : (서명, 날인)

고성군수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병원진단서, 병역복무확인서)**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